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59호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지정 고시되고, 제2007-177호(2007.06.07)로 변경지정, 제2008-173호(2008.05.22)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제2010-449호(2010.12.09)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제2011-126호(2011.05.19), 제2011-187호(2011.07.07)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경미한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2-133호(2012.05.24)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제2012-195호(2012.07.26)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제2012-255호(2012.09.27)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2-282호(2012.10.25), 제2013-76호(2013.03.14), 제2013-112호(2013.04.04)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경미한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3-168호(2013.05.30)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3-184호(2013.06.13)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경미한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3-290호(2013.09.05)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4-16호(2014.01.16), 제2014-55호(2014.02.20), 제2014-197호(2014.05.22)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경미한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4-217호(2014.06.12)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4-299호(2014.08.28)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경미한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4-445호(2014.12.18)로 수색·증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6-126호(2016.04.28)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경미한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6-134호(2016.05.04), 제2016-165호(2016.06.16)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제2017-28호(2017.01.26)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7-97호(2017.03.16)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제2018-58호(2018.03.02)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된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 12조 1항에 의거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수색1촌치관리구역)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제3항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수색1촌치관리구역)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일

서울특별시장

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변경없음)

명칭	유형	위치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변경후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	주거지형	수색동 증산동	792,871.2	-	792,871.2	-

- 나.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변경없음)
 다.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변경없음)
 라.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792,871.2	-	792,871.2	100.0	
주거용지	소 계	518,729.3	증) 27,891.6	546,620.9	68.9	
	공동주택	451,981.9	증) 24,160.0	476,141.9	60.1	
	상업용지	13,685.0	-	13,685.0	1.7	
	복합용지	29,765.8	증) 4,340.2	34,106.0	4.3	
	주택용지	145.0	-	145.0	0.1	
	유 치 원	2,882.4	감) 608.6	2,273.8	0.3	
	종교용지	6,915.7	-	6,915.7	0.9	
	존 치	13,353.5	-	13,353.5	1.7	
공공시설 용지	소 계	274,141.9	감) 27,891.6	246,250.3	31.1	
	도 로	108,527.3	증) 1,599.6	110,126.9	13.9	변경
	보행자도로	5,589.4	-	5,589.4	0.7	
	공 원	39,983.7	감) 4,936.9	35,046.8	4.4	1개소 폐지
	녹 지	23,783.6	-	23,783.6	3.0	
	광 장	2,513.3	감) 1,436.3	1,077.0	0.2	1개소 폐지
	공공공지	2,194.0	감) 2,194.0	-	-	폐지
	열공급설비	【4,936.9】	감) 【4,936.9】	-	-	폐지
	전기공급설비	【1.4km중 0.73km】	-	【1.4km중 0.73km】	-	수색~향동
	변 전 소	8,486.0	감) 7,944.0	542.0	0.1	건축물 내부(지하)에 설치
	공공청사	3,967.0	-	3,967.0	0.5	
	학 교	69,434.3	감) 12,980.0	56,454.3	7.1	1개소 폐지
	사회복지시설	4,221.3	-	4,221.3	0.5	
	도 서 관	3,776.0	-	3,776.0	0.5	
	문화시설	1,666.0	-	1,666.0	0.2	
	체육시설	-	증 (4,023.0)	(4,023.0)	(0.5)	복합용지내 복합화

※ 【 】 는 중복결정 면적임

※ () 는 복합용지내 체육시설 복합화에 따른 대지지분(890㎡)과 부지환산면적(3,133㎡)의 합산 면적임

2) 인구주택수용계획(변경) : 13,552호 / 36,938인

구분		계획세대(호)			인구수(인)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3,019	증) 533	13,552	35,498	증) 1,440	36,938	-
촉진 구역	소계	12,772	-	12,772	34,485	-	34,485	2.7인/세대 (202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세대당 인구 적용)
	40㎡ 이하	1,157	-	1,157	3,124	-	3,124	
	40-50㎡	958	-	958	2,587	-	2,587	
	50-60㎡	3,350	-	3,350	9,044	-	9,044	
	60-85㎡	5,842	-	5,842	15,774	-	15,774	
	85㎡ 초과	1,465	-	1,465	3,956	-	3,956	
존치정비 구역	공동주택	-	-	-	-	-	-	수색1 존치관리구역 편입에 따른 폐지
존치관리 구역	공동주택	-	증) 533	533	-	증) 1,440	1,440	2.7인/세대
존치지역		247	-	247	1,013	-	1,013	-

3)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

가) 교육시설 (변경)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학교	초등학교	증산동 212 일대	11,279.0	-	11,279.0	서고제30호 (75.02.21)	
기정	2	학교	중학교	증산동 207-11 일대	14,924.0	-	14,924.0	서고제50호 (82.02.03)	
기정	3	학교	중학교	증산동 131-98 일대	12,668.3	-	12,668.3	서고 제2008-173호	
기정	4	학교	초등학교	수색동 129 일대	17,583.0	-	17,583.0	서고제10호 (79.01.10)	
폐지	5	학교	-	수색동 23 일대	12,980.0	감)12,980.0	-	서고 제2008-173호	

■ 교육시설(학교)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5	학교	- 학교 폐지 - 면적 : 12,980㎡→0㎡ (감 12,980㎡)	학교시설 해제요청(서울시 교육청)에 따른 학교시설 폐지

나) 사회복지시설 (변경없음)

다) 공공청사 (변경없음)

라) 공공공지(변경)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2	-	수색동 160-1 일대	2,194.0	감) 2,194.0	-	서고 제2008-173호	

■ 공공공지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	• 공공공지 폐지 - 면적 : 2,194㎡→0㎡(감 2,194㎡)	• 불합리한 기반시설 계획 정비 및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공공공지 폐지

마) 문화시설 (변경없음)

바) 도서관 (변경없음)

4)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변경)

구분	시설 세분	시설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봉산도시자연 공원			수색동 산17-1임 일대	1,510,558 (지구내2,704)	-	1,510,558 (지구내2,704)	
생활권 공원	근린 공원		1 개소	23,130.9	감) 4,936.9	18,194.0	
		2	수색동 160-1대 일대	4,936.9	감) 4,936.9	-	
		3	증산동 207-8대 일대	18,194.0	-	18,194.0	
	어린이 공원		4 개소	9,632.8	-	9,632.8	
		1	수색동 135-3대 일대	1,502.0	-	1,502.0	
		2	증산동 211-11대 일대	4,595.5	-	4,595.5	
		3	증산동 171-10대 일대	1,503.0	-	1,503.0	
		4	증산동 131-142대 일대	2,032.3	-	2,032.3	
	소공원		2 개소	4,516.0	-	4,516.0	
		1	수색동 25-15대 일대	936.0	-	936.0	
녹지	완충 녹지		1 개소	3,015.1	-	3,015.1	
		4	증산동 160-1대 일대	3,015.1	-	3,015.1	
	연결 녹지		4 개소	17,409.5	-	17,409.5	
		6	증산동 188-9대 일대	1,503.0	-	1,503.0	
		7	증산동 205-33대 일대	4,501.0	-	4,501.0	
		8	증산동 193-23대 일대	6,080.6	-	6,080.6	
		9	증산동 131-95대 일대	5,324.9	-	5,324.9	
	경관 녹지		3 개소	3,359.0	-	3,359.0	
		2	수색동 354-4대 일대	515.0	-	515.0	
		3	수색동 129-3학 일대	243.0	-	243.0	
		5	수색동 321임 일대	2,601.0	-	2,601.0	

- 5) 교통계획 (변경없음)
 6) 경관계획 (변경없음)
 7)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가) 주택재개발사업부문 (변경없음)
 나) 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변경)

구분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건폐율	계획용적률	높이(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비고
기정	1	수색동	366-11	0.4	60%	400%이하	24층(104m이하)	2	복합용도	
기정	2	수색동	106-1	0.4	60%	780%이하	35층(130m이하)	2	복합용도	
기정	3	수색동	102-20	0.3	60%	750%이하	35층(130m이하)	2	복합용도	
폐지	4	수색동	160-1	1.1	60%	370%이하	25층(104m이하)	2	복합용도	수색10 재정비촉진구역
기정	6	수색동	32.13	0.4	60%	760%이하	28층(110m이하)	2	복합용도	
기정	7	수색동	369-3	0.4	60%	350%이하	33층(130m이하)	2	복합용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99호(2016.7.7)에 따른 수색10재정비촉진구역 폐지

- 8)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

구분	사업방식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총 계			—	792,871.2	—	792,871.2	
재정비 촉진 구역	합 계		—	695,266.8	감)11,376.1	683,890.7	
	주 택 재개발	수색4재정비촉진구역	수색동 361—10일대	61,898.0	—	61,898.0	
		수색6재정비촉진구역	수색동 115—5일대	66,062.0	—	66,062.0	
		수색7재정비촉진구역	수색동 412 일대	31,796.6	—	31,796.6	
		수색8재정비촉진구역	수색동 17—28일대	29,884.0	—	29,884.0	
		수색9재정비촉진구역	수색동 30—2일대	36,458.6	—	36,458.6	
		수색13재정비촉진구역	수색동 341—6 일대	69,681.0	—	69,681.0	
		증산2재정비촉진구역	증산동 216—10일대	78,755.2	—	78,755.2	
		증산4재정비촉진구역	증산동 205—33일대	172,932.0	—	172,932.0	
		증산5재정비촉진구역	증산동 157—34 일대	112,694.3	—	112,694.3	

구분	사업방식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재정비 촉진 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및 시장정비 사업	수색1재정비촉진구역	수색동 366-11일대	4,422.0	-	4,422.0	
		수색2재정비촉진구역	수색동 367-6 일대	5,026.0	-	5,026.0	시장정비사업
		수색3재정비촉진구역	수색동 106-1 일대	3,704.0	-	3,704.0	
		수색5재정비촉진구역	수색동 102-20일대	2,961.0	-	2,961.0	
		수색10재정비촉진구역	수색동 160-1 일대	11,376.1	감)11,376.1	-	수색1존치관리구역 편입에 따른 폐지
		수색11재정비촉진구역	수색동 32-13 일대	3,163.0	-	3,163.0	
		수색12재정비촉진구역	수색동 369-3 일대	4,453.0	-	4,453.0	
존치 정비 구역	합 계		-	40,966.9	감)40,966.9	-	
	지구단위계획	수색2존치정비구역	수색동 160 일대	40,966.9	감)40,966.9	-	수색1존치관리구역 편입에 따른 폐지
존치관 리 구역	합 계		-	56,637.5	-	108,980.5	
	지구단위계획	수색1존치관리구역	수색동 160 일대	-	증)52,343.0	52,343.0	신설
	존치	존치	-	56,637.5	-	56,637.5	존치건축물

※ 존치관리구역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99호(2016.7.7)로 해제된 수색10재정비촉진구역과 한전의 수색변전소 지하화 계획 등 주변 개발여건을 고려, 수색10재정비촉진구역과 수색2존치정비구역을 폐지, 수색1존치관리구역으로 통합

※ 기존 존치지역 : 수색초, 증산초중, 두산위브 APT, 문영APT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변경)

가) 수색1~9재정비촉진구역 (변경없음)

나) 수색11~13재정비촉진구역 (변경없음)

다) 증산2~5재정비촉진구역 (변경없음)

라) 수색1존치관리구역(수색10재정비촉진구역 및 수색2존치정비구역 : 폐지)

구분			면적(㎡)					구성비 (%)
			기정			변경	변경후	
			수색10 재정비촉진구역	수색2 존치정비구역	소계		수색1 존치관리구역	
계			11,376.1	40,966.9	52,343.0	－	52,343.0	100.0
주거 지역	소 계		11,351.1	40,966.9	52,318.0	－	52,318.0	99.9
	일반 주거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5,683.0	29,576.6	35,259.6	감) 5,683.0	29,576.6	56.5
		제2종일반주거지역	－	470.0	470.0	－	470.0	0.9
		제3종일반주거지역	－	52.0	52.0	－	52.0	0.1
	준주거지역		5,668.1	10,868.3	16,536.4	증) 5,683.0	22,219.4	42.4
일반상업지역			25.0	－	25.0	－	25.0	0.1

10)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변경)

구분	구역명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계획		비고
					기준	최대	평균/최고 층수	최고높이 (m)	
기정	수색1촉진구역		복합용도	60이하	353	400.0이하	-/24이하	104이하	
기정	수색2촉진구역		복합용도	60이하	-	-	-/-	-	
기정	수색3촉진구역		복합용도	60이하	600	780.0이하	-/35이하	130이하	
기정	수색4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이하	210	256.83이하	18.5이하/25이하	80이하	
기정	수색5촉진구역		복합용도	60이하	549	750이하	-/35이하	130이하	
기정	수색6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0이하 60이하	228.4	267.90이하	19.90이하/30이하	92이하	
기정	수색7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이하	210	249.55이하	17.5이하/22이하	66이하	
기정	수색8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이하	210	263.90이하	18.70이하/22이하	66이하	
기정	수색9 재정비 촉진구역	9-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0이하	231.3	274.00이하	25.4이하/30이하	92이하	
		9-2	판매시설, 업무시설 및 공동주택	60이하	281.8	439.90이하	-/22이하	85이하	
폐지	수색10촉진구역		복합용도	60이하	280.0	370이하	-/25이하	104이하	수색1준치관리 구역편입에 따른 폐지
기정	수색11촉진구역		복합용도	60이하	360.0	400이하	-/22이하	104이하	
기정	수색12촉진구역		복합용도	60이하	553.0	760이하	-/28이하	110이하	
기정	수색13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이하	210	240이하	14.80이하/20이하	65이하	
기정	증산2 촉진 구역	2-1,2-2 2-3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0이하	210.0	247.70이하	22이하/30이하	92이하	
		2-4	판매시설, 업무시설 및 공동주택	60이하	261.09	290.90이하	-/25이하	90이하	
기정	증산4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이하	210	247이하	18.1이하/30이하	92이하	
기정	증산5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이하	210	263.70이하	19.70이하/30이하	92이하	
폐지	수색2준치정비구역		복합용도	60이하	-	-	-/-	-	수색1준치관리 구역편입에 따른 폐지

11)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변경)

가) 추진지구 기반시설 (변경)

구 분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65,655.9	감) 19,947.6	245,708.3	
도로	108,527.3	증) 1,599.6	110,126.9	
보행자도로	5,589.4	-	5,589.4	
공원	39,983.7	감) 4,936.9	35,046.8	봉산도시자연공원 포함
녹지	23,783.6	-	23,783.6	원충녹지1개소, 연결녹지4개소, 경관녹지3개소
광장	2,513.3	감) 1,436.3	1,077.0	2개소
공공공지	2,194.0	감) 2,194.0	-	-
열공급설비	【4,936.9】	감) 【4,936.9】	-	-
전기공급설비	【1.4km중 0.73km】	-	【1.4km중 0.73km】	수색 ~ 향동(기 설치)
공공청사	3,967.0	-	3,967.0	5개소
학교	69,434.3	감) 12,980.0	56,454.3	4개소
사회복지시설	4,221.3	-	4,221.3	6개소
도서관	3,776.0	-	3,776.0	1개소
문화시설	1,666.0	-	1,666.0	1개소
체육시설	-	증) (4,023.0)	(4,023.0)	1개소

※ 【 】는 중복결정 면적임

※ ()는 북함용지내 체육시설 복합화에 따른 대지지분(890㎡)과 부지환산면적(3,133㎡)의 합산 면적임

나) 구역별 기반시설 분담(변경)

구분	구역명	구역면적 (㎡) A	계획기반시설 면적(㎡) ①	계획기반시설내 국공유지(㎡) ②	기존기반시설내 국공유지(㎡) ③	계획 기반시설중 유상매입시설 ④	순부담 면적(㎡) B=①-②-③-④	기반시설 분담률(%) B/A	비고
합 계		683,890.7	184,864.4	42,307.9	61,759.1	401	86,944	12.7	
기정	수색1	4,422.0	1,162.0	354.0	371.0	-	437.0	9.9	
기정	수색2	5,026.0	931.0	38.0	128.0	-	765.0	15.2	
기정	수색3	3,704.0	1,342.0	768.0	18.0	-	556.0	15.0	
기정	수색4	61,898.0	13,606.0	2,313.0	7,051.0	-	7,581.0	12.3	
기정	수색5	2,961.0	1,366.0	444.0	468.0	-	454.0	15.3	
기정	수색6	66,062.0	18,346.0	5,227.0	6,090.0	401	6,628.0	10.0	
기정	수색7	31,796.6	6,434.6	1,963.0	-	-	4,468.6	14.1	
기정	수색8	29,884.0	9,072.0	2,638.0	2,727.0	-	3,707.0	12.4	
기정	수색9	36,458.6	9,119.9	1,023.6	1,729.0	-	6,367.3	17.5	
폐지	수색10	-	-	-	-	-	-	-	
기정	수색11	3,163.0	315.0	-	-	-	315.0	10.0	
기정	수색12	4,453.0	2,079.0	874.0	495.0	-	710.0	15.9	
기정	수색13	69,681.0	14,280.0	2,375.0	7,698.0	-	7,418.6	10.6	
기정	증산2	78,755.2	23,154.1	7,057.8	7,699.6	-	8,396.7	10.7	
기정	증산4	172,932.0	51,957.0	10,812.0	16,710.0	-	24,435.0	14.1	
기정	증산5	112,694.3	31,699.8	6,420.5	10,574.5	-	14,704.8	13.0	

※ 수색10재정비추진구역 해제(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99호(2016.7.7)에 따른 기반시설 분담계획 폐지

12)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변경)

구분	구역	임대주택 전용면적					비고
		소계	40㎡ 이하	40~50㎡	50~60㎡	60~85㎡	
기정	수색1	-	-	-	-	-	도시환경정비사업
기정	수색2	-	-	-	-	-	시장정비사업
기정	수색3	-	-	-	-	-	도시환경정비사업
기정	수색4	203	84	84	35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기정	수색5	-	-	-	-	-	도시환경정비사업
기정	수색6	208	88	97	23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기정	수색7	112	45	45	22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기정	수색8	99	40	40	19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기정	수색9	135	57	54	20	4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폐지	수색10	-	-	-	-	-	도시환경정비사업
기정	수색11	-	-	-	-	-	도시환경정비사업
기정	수색12	-	-	-	-	-	도시환경정비사업
기정	수색13	278	106	87	85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기정	증산2	237	114	99	24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기정	증산4	595	228	228	139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기정	증산5	292	120	121	5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폐지	수색2준치	-	-	-	-	-	지구단위계획
합계		2,159	882	855	418	4	

13)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변경)

가) 수색1~9재정비촉진구역 (변경없음)

나) 수색10재정비촉진구역 : 폐지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199호(2016. 7. 7)로 정비(예정)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고시

다) 수색11~13재정비촉진구역 (변경없음)

라) 증산2~5재정비촉진구역 (변경없음)

14)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15) 기타계획(방재계획, 정보화계획, 에너지순환계획, 자족성계획, 특성화계획, 여성친화적계획) (변경없음)

16) 광고물 관리계획 (변경없음)

17)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18) 기타특기사항 (변경없음)

마.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재정비촉진지구 결정 (변경없음)

가) 재정비촉진지구 결정조서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기 정	변 경	변경후	
주거지형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	수색동, 증산동	792,871.2	-	792,871.2	서고제2008-173호 (2008.05.22)

2) 용도지역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792,871.2	－	792,871.2	100.0		
소계		778,170.2	－	778,170.2	98.1		
주거 지역	일반 주거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84,993.5	－	84,993.5	10.7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55,767.3	감) 5,683.0	150,084.3	18.9	
		제2종일반주거지역	414,893.2	－	414,893.2	52.3	
		제3종일반주거지역	74,739.2	－	74,739.2	9.4	
	준주거지역		47,777.0	증) 5,683.0	53,460.0	6.8	
일반상업지역		14,701.0	－	14,701.0	1.9		

※ 수색10재정비촉진구역 해제(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99호(2016.7.7))에 따른 용도지역 환원 내용 반영

- 제2종일반주거지역 (150,084.3㎡ → 155,767.3㎡), 준주거지역 (53,460.0㎡ → 47,777.0㎡)

■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구분	위치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1	수색동 154-17 일원 (A2)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준주거지역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99호 (2016.7.7)로 정비구역 해제된 수색10재정비촉진구역과 수색2존치 정비구역의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가) 교통시설 (변경)

(1) 도로(변경)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위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종점				
기정	대로	1	4	34~40	주간선 도로	1,700	남가좌동 (사천교)	신도읍 강매리	일반 도로	-	건고738호 (63.12.24)	
기정	중로	1	442	21	집산 도로	72	수색동 411-9도 일원	수색동 411-9도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1	443	18~21	집산 도로	82	증산동 198-6구 일원	증산동 198-7구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1	444	10~21	집산 도로	1,480	증산동 222-4대 일원	증산동 158-26대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1	445	21	집산 도로	91	증산동 197-5도 일원	증산동 197-5도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1	446	9~21	국지 도로	48	증산동 168-4대 일원	증산동 168-1대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1	447	10.5~21	집산 도로	102	증산동 196-1도 일원	증산동 196-1도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2	61	15	보조간선 도로	5,615	갈현동 (신:388-1)	수색동 (신:109-1)	일반 도로	-	서고 2002-262호 (02.06.27)	
기정	중로	2	461	15~26	국지 도로	733	수색동 325-21대 일원	수색동 111-1대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2	462	15	국지 도로	481	수색동 358-3대 일원	수색동 136-50대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2	463	15	국지 도로	202	수색동 115-11대 일원	수색동 136-11대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구분	규모				기능	연장	위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종점				
기정	중로	2	464	15	국지 도로	212	수색동 160대 일원	수색동 165-1대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2	465	15	국지 도로	57	수색동 101-7대 일원	수색동 160대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변경	중로	2	465	15~21	국지 도로	57	수색동 101-7대 일원	수색동 160대 일원	일반 도로	-	제2008-173호	
기정	중로	2	466	15	국지 도로	481	수색동 172도 일원	수색동 28-1도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2	467	7.5~15	국지 도로	619	수색동 145-2 일원	수색동 218-8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변경	중로	2	467	15	국지 도로	619	수색동 145-2대 일원	수색동 218-8대 일원	일반 도로	-	제2008-173호	
기정	중로	2	468	7.5	국지 도로	38	수색동 78-6 일원	수색동 160-1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변경	중로	2	468	15	국지 도로	50	수색동 77-5대 일원	수색동 160-1대 일원	일반 도로	-	제2008-173호	
기정	중로	2	469	12	국지 도로	132	증산동 219-28대 일원	증산동 219-15대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2	470	15	국지 도로	80	증산동 산21-3임 일원	증산동 206-4대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2	471	11~15	국지 도로	91	증산동 197-18도 일원	증산동 174-1주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2	473	15	국지 도로	115	증산동 198-1구 일원	증산동 198-1구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2	475	15	국지 도로	41	수색동 32-34도 일원	수색동 217-32대 일원	보행자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2	476	15	국지 도로	44	수색동 76-1대 일원	수색동 32-6대 일원	보행자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3	458	12	국지 도로	27	증산동 217-4대 일원	증산동 271-1대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3	459	12	국지 도로	104	증산동 233도 일원	증산동 233도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3	461	6~12	국지 도로	146	증산동 197-18도 일원	증산동 197-6도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3	463	12	국지 도로	170	증산동 197-6도 일원	증산동 197-6도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3	465	12	국지 도로	215	증산동 200-1도 일원	증산동 197-23도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구분	규모				기능	연장	위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종점				
기정	중로	3	466	6~12	국지 도로	283	증산동 197-5도 일원	증산동 197-1도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소로	1	1	10~15	국지 도로	154	수색동 24-3대 일원	수색동 216-14대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소로	1	2	11	국지 도로	115	증산동 254-1도 일원	증산동 201-7대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소로	1	3	8~10	특수 도로	150	증산동 217-28대 일원	증산동 217-4대 일원	보행자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소로	1	4	10	특수 도로	185	증산동 236도 일원	증산동 233도 일원	보행자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60	증산동 197-6도 일원	증산동 197-6도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소로	2	2	9	특수 도로	49	수색동 102-20대 일원	수색동 104-1대 일원	보행자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폐지	소로	2	3	8	국지 도로	43	수색동 150-20도 일원	수색동 150-20도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1990-354호	수색10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기반시설 환원
폐지	소로	2	9	6	국지 도로	35	수색동 146-13구 일원	수색동 146-13구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1990-354호	수색10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기반시설 환원
기정	소로	3	1	6	국지 도로	13	수색동 129-4학 일원	수색동 129-4학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소로	3	2	7	특수 도로	63	수색동 368-4대 일원	수색동 411-9도 일원	보행자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소로	3	4	4.5	특수 도로	65	수색동 366-5대 일원	수색동 365-8대 일원	보행자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소로	3	5	6	국지 도로	53	증산동 131-95대 일원	증산동 254-1도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12-195호	
기정	소로	3	6	6	국지 도로	142	수색동 77-5 일원	수색동 146-22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2-262호	수색10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기반시설 환원
변경	소로	3	6	6~8	국지 도로	185	수색동 153-1 일원	수색동 76-27 일원	일반 도로	-		-

※ 환원된 시설의 해당 폭원 및 연장 반영

■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2-465	중로2-465	• 도로통합에 따른 일부구간 폭원 변경 - 폭원 : 15m → 15~21m	• 체계적 도로관리 및 정비를 위한 도로통합 및 일부구간 폭원 확대
중로2-467	중로2-467	• 일부구간 폭원 변경 - 폭원 : 7.5m → 15m	• 체계적 도로관리 및 정비를 위한 일부 확대
중로2-468	중로2-468	• 일부구간 폭원 변경 및 연장확대 - 폭원 : 7.5m → 15m - 연장 : 38m → 50m	• 체계적 도로관리 및 정비를 위한 일부 폭원 및 연장 확대
소로2-3	-	• 도로 폐지	• 체계적 도로관리 및 정비를 위한 도로통합(소로 3-6호선)에 따른 폐지
소로2-9	-	• 도로 폐지	• 체계적 도로관리 및 정비를 위한 도로통합(중로 2-465호선)에 따른 폐지
소로3-6	소로 3-6	• 일부구간 폭원 변경 및 연장확대 - 폭원 : 6 → 6~8m - 연장 : 142m → 185m	• 체계적 도로관리 및 정비를 위한 도로 통합 및 일부구간 선형변경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99호(2016. 7. 7)에 따른 일부 환원된 도로의 체계적 관리 및 정비를 위해 도로 변경

나) 공간시설 (변경)

(2) 공원(변경)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봉산도시 자연공원	수색동 산17-1임 일대	1,510,558.0 (지구내 2,767)	-	1,510,558.0 (지구내 2,767)	서고제513호 (83.09.29)	
폐지	2	근린공원	수색동 160-1대 일대	4,936.9	감) 4,936.9	-	서울시고시 제2008-173호	
기정	3	근린공원	증산동 207-8대 일대	18,194	-	18,194	서울시고시 제2008-173호	
기정	1	어린이공원	수색동 135-3대 일대	1,502.0	-	1,502.0	서울시고시 제2008-173호	
기정	2	어린이공원	증산동 211-11대 일대	4,595.5	-	4,595.5	서울시고시 제2008-173호	
기정	3	어린이공원	증산동 171-10대 일대	1,503.0	-	1,503.0	서울시고시 제2008-173호	
기정	4	어린이공원	증산동 131-142대 일대	2,032.3	-	2,032.3	서울시고시 제2008-173호	
기정	1	소공원	수색동 25-15대 일대	936.0	-	936.0	서울시고시 제2008-173호	
기정	2	소공원	수색동 361-10 일대	3,580.0	-	3,580.0	서울시고시 제2016-134호	

■ 공원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	• 공원 폐지 - 면적 : 4,936.9㎡→0㎡ (감 4,936.9㎡)	• 불합리한 기반시설 계획 정비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공원 폐지

(3) 녹지 (변경없음)

(4) 공공공지(변경)

■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2	-	수색동 160-1 일대	2,194.0	감) 2,194.0	-	서고 제2008-173호	

■ 공공공지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	• 공공공지 폐지 - 면적 : 2,194㎡→0㎡(감 2,194㎡)	• 불합리한 기반시설 계획 정비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공공공지 폐지

(5) 광장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	-	광장	수색동 122-2 일대	489	-	489	서고 제2008-173호	
기정	3	-	광장	수색동 131-1 일대	588	-	588	서고 제2008-173호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99호 (2016. 7. 7)에 따른 광장①은 기 폐지

다) 유통·공급시설 (변경)

(1) 시장 (변경없음)

(2) 전기공급설비 (변경없음)

(3) 열공급설비(변경)

■ 열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	-	수색동 160-1 일대	4,936.9	감) 4,936.9	-	서고 제2008-173호	수색2준치정비구역 내 근린공원과 중복 결정

■ 열공급설비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	- 열공급설비 폐지 - 면적 : 4,936.9㎡→0㎡ (감 4,936.9㎡)	당초 집단에너지 공급 관련 열원시설 설치를 위해 부지를 확보 하였으나, 구역별 사업시행 일정 등이 상이하고 개별난방방식으로 사업시행인가 되어 열공급설비 폐지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변경)

(1) 공공청사 (변경없음)

(2) 학교 (변경)

■ 학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건축물의 범위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기정	1	학교	초등 학교	증산동 212 일대	11,279.0	-	11,279.0	35% 이하	120% 이하	4층 높이완화 (4⇒5층)	서고제30호 (75.02.21)	증산 초
기정	2	학교	중학교	증산동 207-11 일대	14,924.0	-	14,924.0	35% 이하	120% 이하	4층 높이완화 (4⇒5층)	서고제50호 (82.02.03)	증산 중
기정	3	학교	중학교	증산동 131-98 일대	12,668.3	-	12,668.3	35% 이하	120% 이하	5층	서고 제2008-173호	연서 중
기정	4	학교	초등 학교	수색동 129 일대	17,583.0	-	17,583.0	35% 이하	120% 이하	4층 높이완화 (4⇒5층)	서고제10호 (70.01.10)	수색 초
폐지	5	학교	-	수색동 23 일대	12,980.0	감)12,980	-	35% 이하	120% 이하	4층 높이완화 (4⇒5층)	서고 제2008-173호	

■ 학교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5	-	• 학교 폐지 - 면적 : 12,980㎡ → 0㎡ (감 12,980㎡)	• 2011.1.27 서울시교육청(학교지원과-2332호) 학교시설 해제요청에 따른 학교시설 폐지

(3) 도서관 (변경없음)

(4) 사회복지시설 (변경없음)

4)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 (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번호 표시	구역명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①	수색변전소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은평구 수색동 160번지 일대	40,966.9	감) 40,966.9	-	2008.5.22 (서울시 제2008-173호)	-
신설	①	수색1준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은평구 수색동 160번지 일대	-	증) 52,343.0	52,343.0	-	-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사유서

구역명	위치	면적	변경사유
수색변전소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은평구 수색동 160번지 일대	•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 - 면적 : 40,996.9㎡ → 0㎡ (감 40,996.9㎡)	• 수색2 준치정비구역 폐지에 따른 수색변전소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
수색1준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은평구 수색동 160번지 일대	•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 면적 : 0㎡ → 52,343.0㎡ (증 52,343.0㎡)	• 기존 수색변전소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정비구역 해제된 수색10재정비촉진구역(11,376.1㎡)을 포함하여 한전의 수색변전소 지하화 계획 등 주변개발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5) 수색1준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 적(㎡)	구성비(%)	비고
총계	52,343.0	100.0	
도 로	7,320.6	14.0	
공동주택용지	24,160.0	46.2	
복합용지	20,862.4	39.8	• 체육시설 복합화 - 부지환산 면적 3,133㎡ - 대지지분면적 890㎡

나)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정	증감	변경	
계		52,343.0	—	52,343.0	100.0
주거 지역	소 계	52,318.0	—	52,318.0	99.9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35,259.6	감) 5,683.0	29,576.6	56.5
	제2종일반주거지역	470.0	—	470.0	0.9
	제3종일반주거지역	52.0	—	52.0	0.1
	준주거지역	16,536.4	증) 5,683.0	22,219.4	42.4
일반상업지역		25.0	—	25.0	0.1

■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구분	위치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1	수색동 154-17 일원 (A2)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준주거지역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99호 (2016.7.7)로 정비구역 해제된 수색10재정비촉진구역과 수색2준치정비구역의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

(2) 용도지구(변경없음)

■ 용도지구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연장(m)	폭원(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	미관 지구	중심지 미관지구	수색로변 양측	12,360 (2,540)	1,030 (210)	양측 12	서고 164호 (1982. 04. 22.)	

※ ()는 구역내 면적 및 연장

다)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도로(변경)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2	464	15 (7.5)	국지 도로	212 (156)	수색동 160 일원	수색동 165-1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2	465	15 (-)	국지 도로	57 (57)	수색동 101-7대 일원	수색동 160대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변경	중로	2	465	15~21 (6)	국지 도로	57 (57)	수색동 101-7대 일원	수색동 160대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2	466	15 (7.5)	국지 도로	481 (367)	수색동 172도 일원	수색동 28-1도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2	467	7.5~15 (7.5)	국지 도로	619 (206)	수색동 145-2 일원	수색동 218-8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변경	중로	2	467	15	국지 도로	619 (206)	수색동 145-2대 일원	수색동 218-8대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2	468	7.5 (-)	국지 도로	38 (-)	수색동 77-10 일원	수색동 160-1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변경	중로	2	468	15 (7.5)	국지 도로	50 (50)	수색동 77-5대 일원	수색동 160-1대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폐지	소로	2	3	8	국지 도로	43	수색동 150-20도일원	수색동 150-20도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2-262호	수색10정비구역해 제에 따른 기반시설 환원
폐지	소로	2	9	6	국지 도로	35 (35)	수색동 146-13구일원	수색동 146-13구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1990-354호	
기정	소로	3	6	6 (6)	국지 도로	142 (142)	수색동 77-5대 일원	수색동 146-22대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2-262호	
변경	소로	3	6	6~8 (6~8)	국지 도로	185 (185)	수색동 153-1 일원	수색동 76-27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2-262호	

※ ()는 구역내 연장, 폭원 임

■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2-465	중로2-465	• 도로통합에 따른 일부구간 폭원 변경 - 폭원 : 15m → 15~21m	• 체계적 도로관리 및 정비를 위한 도로통합 및 일부구간 폭원 확대
중로2-467	중로2-467	• 일부구간 폭원 변경 - 폭원 : 7.5m → 15m	• 체계적 도로관리 및 정비를 위한 일부 확대
중로2-468	중로2-468	• 일부구간 폭원 변경 및 연장확대 - 폭원 : 7.5m → 15m - 연장 : 38m → 50m	• 체계적 도로관리 및 정비를 위한 일부 폭원및 연장 확대
소로2-3	-	• 도로 폐지	• 체계적 도로관리 및 정비를 위한 도로통합(소로3-6호선)에 따른 폐지
소로2-9	-	• 도로 폐지	• 체계적 도로관리 및 정비를 위한 도로통합(중로2-465호선)에 따른 폐지
소로3-6	소로 3-6	• 일부구간 폭원 변경 및 연장확대 - 폭원 : 6 → 6~8m - 연장 : 142m → 185m	• 체계적 도로관리 및 정비를 위한 도로 통합 및 일부구간 선형변경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99호 (2016. 7. 7)에 따른 일부 환원된 도로의 체계적 관리 및 정비를 위해 도로 변경

(2) 공원(변경)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2	-	근린 공원	수색동 160-1대 일대	4,936.9	감) 4,936.9	-	서고 제2008-173호	

■ 공원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	• 공원 폐지 - 면적 : 4,936.9㎡→0㎡ (감 4,936.9㎡)	• 불합리한 기반시설 계획 정비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공원 폐지

(3) 공공공지(변경)

■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2	-	수색동 160-1 일대	2,194.0	감) 2,194.0	-	서고 제2008-173호 (08.05.22)	

■ 공공공지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	• 공공공지 폐지 - 면적 : 2,194㎡→0㎡(감 2,194㎡)	• 불합리한 기반시설 계획 정비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공공공지 폐지

(4) 열공급설비(변경)

■ 열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	-	수색동 160-1 일대	4,936.9	감) 4,936.9	-	서고 제2008-173호	• 수색2준치정비구역 내 근린공원 중복 결정

■ 열공급설비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	- 열공급설비 폐지 - 면적 : 4,936.9㎡→0㎡ (감 4,936.9㎡)	당초 집단에너지 공급 관련 열원시설 설치를 위해 부지를 확보하였으나, 구역별 사업시행 일정 등이 상이하고 개별 난방방식으로 사업시행인가 되어 열공급설비 폐지

(5) 학교(변경)

■ 학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건축물의 범위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건폐율	용적률	높이		
폐지	5	학교	-	수색동 23 일대	12,980.0	감)12,980	-	35% 이하	120% 이하	4층 높이완화 (4→5층)	서고 제2008-173 호	

■ 학교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5	-	- 학교 폐지 - 면적 : 12,980㎡→0㎡(감 12,980㎡)	2011.1.27 서울시교육청(학교지원과-2332호) 학교시설 해제요청에 따른 학교시설 폐지

라)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치	면적(㎡)	비고
A1	1	은평구 수색동 160대 일원	24,160.0	특별계획구역
	2	은평구 수색동 160-1대 일원	7,455.0	
	3	은평구 수색동 160대 일원	5,509.0	한전업무용지
A2	1	은평구 수색동 160-1대 일원	3,916.0	
	-	은평구 수색동 77-5대 일원	331.0	
A3	-	은평구 수색동 153-10대 일원	3,651.4	

(2) 공동개발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공동개발	지정 • 동일소유필지, 과소필지 등 둘 이상의 필지를 일단의 대지로 건축하도록 지정이 필요한 경우	
	권장 • 가구형태의 정형화, 규모 있는 개발유도 등 둘 이상의 필지를 일단의 대지로 건축하도록 권장이 필요한 경우	

■ 공동개발에 관한 결정조서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A1	1	은평구 수색동 150-19, 18-2, 19-6, 160, 160-1, 28-1, 23-13, 23-5, 23-3, 23, 19-5	특별계획구역	-
	2	은평구 수색동 160-1, 160, 28-1, 32-42, 30-6		
	3	은평구 수색동 160, 160-1	-	-
A2	1	은평구 수색동 150-20, 158-5, 146-17, 160, 154-50, 160-1	-	-
	-	은평구 수색동 77-4, 77-5, 78-6	공동개발(지정)	-
A3	-	은평구 수색동 153-12, 153-9, 153-10	공동개발(지정)	-
		은평구 수색동 154-2, 154-25	공동개발(지정)	-
		은평구 수색동 154-12, 154-14, 154-26, 154-48(일부)	공동개발(권장)	-
		은평구 수색동 154-16, 154-15, 154-27, 154-48(일부)	공동개발(지정)	-
		은평구 수색동 154-29, 154-18, 154-48(일부), 154-1(일부)	공동개발(지정)	-
		은평구 수색동 154-30, 154-5, 154-32, 154-1(일부), 154-48(일부)	공동개발(지정)	-
		은평구 수색동 76-4, 76-6(일부), 154-48(일부), 154-1(일부),	공동개발(지정)	-
		은평구 수색동 76-6(일부), 76-27	공동개발(지정)	-
		은평구 수색동 154-17, 154-48(일부), 154-1(일부)	공동개발(지정)	-
		은평구 수색동 153-17, 146-16, 154-2, 154-11	공동개발(권장)	-

(3) 대지의 분할

구분	가구 번호	획지 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획지분할 가능선	A2	1	은평구 수색동 160, 158-5	획지분할가능선①	계획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획지/필지 분할가능선 지정
			은평구 수색동 160, 149-17	획지분할가능선②	
			은평구 수색동 160	획지분할가능선③	
			은평구 수색동 160-1, 154-50	획지분할가능선④	
			은평구 수색동 160-1	획지분할가능선⑤	
필지분할 가능선	A3	-	은평구 수색동 154-48	필지분할가능선①	
			은평구 수색동 154-48	필지분할가능선②	
			은평구 수색동 154-1, 154-48	필지분할가능선③	
			은평구 수색동 154-1, 154-48	필지분할가능선④	
			은평구 수색동 154-1, 154-48	필지분할가능선⑤	
			은평구 수색동 76-6	필지분할가능선⑥	

※ A2(1)획지의 획지분할가능선은 전면부(A3(-), A2(-))필지와 공동개발시에만 적용가능

(4) 최대개발규모

구 분	최대개발규모	비 고
A3	2,500㎡이하	•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는 기존대지 제외 • 계획적 필요에 의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공동개발(지정, 권장)이 적용된 대지 제외 • 자율적 공동개발시 최대개발규모 준수

마)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계획

가구 번호	획지 번호	구분	권장용도	불허용도	비고
A1	1	A/A'	• 주택법 제2조2호에 따른 공동주택, 제8호에 따른 부대시설, 제9호에 따른 복리시설	• 권장용도 이외의 용도	A'
	2	B/B'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대형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병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단독주택 (복합용도 제외)	특별 계획 구역
	3	C/B'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 생활시설 중 안마사술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B'
A2	1	D/B'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세차장 제외)	-
A3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대형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병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운동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도계장	

※ 권장용도는 건축면적(주차장 제외)의 20% 이상 도입 시 인센티브 인정

※ 특별계획구역은 특별계획구역 지침에 따름

(2) 건축물의 개발밀도에 관한 계획

■ 건축물의 밀도(건폐율, 용적률) 결정조서

구분			건폐율 ^{주1)}	용적률			용도지역	비고 ^{주4)}
가구	획지	용도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주2)}	상한용적률 ^{주3)}		
A1	1	공동주택용지	50%	170% 이하	190% 이하	250%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공동주택건립형 (특별계획구역)
	2	복합용지	60%	200% 이하	330% 이하	400% 이하	준주거지역	일반형 (특별계획구역)
	3	한전 업무용지	60%	200% 이하	330% 이하	400% 이하	준주거지역	일반형
A2	1	복합용지	60%	200% 이하	330% 이하	400% 이하		
	—	복합용지	60%	300% 이하	360% 이하	법적용적률 2배 이하		
A3	—	복합용지						

주1) 건폐율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4조 적용

주2) 허용용적률=기준용적률+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의 합

주3) 상한용적률=허용용적률+(기준용적률×1.3× α ×가중치) 이내- α : 공공시설 제공 후 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순부담:총기반시설 면적-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면적) / 공공시설 제공 후 대지면적

- 가중치 : 공공시설 제공부지의 용적률 / 사업부지의 용적률

= 공공시설 제공부지 용적률(용도지역 변경 후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허용용적률) / 사업부지의 용적률(용도지역 변경 후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허용용적률)

주4) 기준용적률 및 허용용적률의 용적률 체계는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2017. 7.)을 준용하여 공동주택 건립형과 일반형으로 구분

주5) 특별계획구역은 특별계획구역 지침에 따름

(3)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및 운영기준

■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

가구(획지)	항목	세분	세부계획기준	비고
A1(3), A2(1)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연면적)×0.2	• 20%이상 설치시(주차장 제외)
		특정층 (꼭대기층) 개방	• 기준용적률×(설치면적/연면적)×1	
	대지 내 공지	공개공지	•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α	• 필로티구조 : $\alpha=1.0$ • 침상형구조 : $\alpha=2.0$ • 개방형구조 : $\alpha=3.0$
		쌈지형공지, 침상형공지	•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α	
		건축한계선	•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1	
		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통로)	•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 α	• 개방형구조 : $\alpha=1.0$
	건축물 개방	건축물 내 공익시설 설치	• 기준용적률×(제공면적/연면적)×1	

가구(획지)	항목	세분	세부계획기준	비고
A2(-), A3(-)	공동개발	공동건축(지정)	• 기준용적률 $\times 0.1 \times \alpha$	2~3필지 : $\alpha=0.8$ 4~5필지 : $\alpha=0.9$ 6필지 이상 : $\alpha=1.0$
		공동건축(권장)	• 기준용적률 $\times 0.08 \times \alpha$	
	이면부(A2(1))와 공동개발시		• 기준용적률 $\times 0.1$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 기준용적률 $\times$ (권장용도면적/연면적) $\times 0.2$	• 20%이상 설치시(주차장 제외)
		특정층 (꼭대기층) 개방	• 기준용적률 $\times$ (설치면적/연면적) $\times 1$	
	대지 내 공지	공개공지	• 기준용적률 $\times$ {(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times \alpha$	- 필로티구조 : $\alpha=1.0$ - 침상형구조 : $\alpha=2.0$ - 개방형구조 : $\alpha=3.0$
		섬지형공지, 침상형공지	• 기준용적률 $\times$ {(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times \alpha$	
		건축한계선	• 기준용적률 $\times$ {(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times 1$	
	건축물 형태 및 외관에 관한 사항	탑상형 건축물	- 저층부 탑상형 : 기준용적률$\times 0.15$ - 고층부 탑상형 : 기준용적률$\times 0.1$	
	보행개선	가로지장물 지중화 또는 이전설치, 지하연결통로 설치 등	• 기준용적률 $\times 0.1$	

■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

가구(획지)	항목	세분	세부계획기준	비고
A1(3), A2(1), A2(-), A3(-)	환경친화 에너지 효율	옥상녹화	• 기준용적률 $\times$ (녹화면적/대지면적) $\times 0.1$	- 법정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 녹화면적은 대지면적 30%까지만 허용
		자연지반보존	• 기준용적률 $\times$ (보존면적/대지면적) $\times 0.1$	- 자연토양 및 투수성 포장 - 지하구조물 미설치시
		녹색건축인증	- 최우수(그린1등급) : 기준용적률$\times 0.12$ - 우수(그린2등급) : 기준용적률$\times 0.08$ - 우량(그린3등급) : 기준용적률$\times 0.04$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 건축물 인증 기준,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 기준 적용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에 따른 의무 대상 준수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 에너지효율1등급 : 기준용적률$\times 0.08$ - 에너지효율2등급 : 기준용적률$\times 0.06$ - 에너지효율3등급 : 기준용적률$\times 0.04$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대	- 신재생에너지1등급 : 기준용적률$\times 0.12$ - 신재생에너지2등급 : 기준용적률$\times 0.10$ - 신재생에너지3등급 : 기준용적률$\times 0.08$ - 신재생에너지4등급 : 기준용적률$\times 0.06$ - 신재생에너지5등급 : 기준용적률$\times 0.04$	-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준용 - 건축물 인증 심사기준 - 공급률로 등급판정 대체 가능
		중수도시설 설치	• 기준용적률 $\times 0.04$	- 총 사용량의 10%이상 처리시설 설치 시 적용 - 관련법상 의무 시설인 경우 제외
		빗물관리시설 설치	• 기준용적률 $\times 0.04$	- 빗물저류 이용시설 용량(ton) 및 빗물침투 시설 - 침투량(ton/hr)의 합이 건축면적$\times 0.05$ 또는 대지면적$\times 0.02$ 이상이 되도록 설치
		녹색 주차장	• 기준용적률 $\times$ (설치면적/대지면적) $\times 0.2$	• 기준용적률 $\times 0.05$ 이내

(4) 건축물 높이에 관한 계획

가구번호	획지번호	계획내용		비고
		최고층수	최고높이	
A1	1	25층 이하	77m 이하	특별계획구역
	2	30층 이하	92m 이하	
	3	30층 이하	92m 이하	
A2	1	-	40m 이하	
	-	-	40m 이하	
A3	-	-	40m 이하	

※ 특별계획구역은 특별계획구역지침에 따름

(5) 건축물 배치 및 형태에 관한 계획

■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분	가구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A1	• 중로2-464호선(15m) 도로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특별계획구역
		• 중로2-466호선(15m) 도로변		
		• 중로2-467호선(15m) 도로변		
	A2	• 중로2-467호선(15m) 도로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 중로2-468호선(15m) 도로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 소로3-6호선(6~8m) 도로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 수색로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A3	• 중로2-465호선(15m) 도로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이하	
		• 소로3-6호선(6~8m) 도로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 수색로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 특별계획구역은 특별계획구역지침에 따름

바)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

(1)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전면공지	• 건축선 후퇴에 따른 전면공지는 차량 또는 보행자의 통행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구조로 조성 - 전면공지는 접한 보도 및 도로와 높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조성 - 도로변과 접해 있는 보도와 동일한 포장패턴으로 조성	
공개공지	• A1(2), A1(3) 획지 내 공개공지 위치지정	-

※ 특별계획구역은 특별계획구역지침에 따름

(2) 공공보행통로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공공보행통로	• 위치 : A1(2), A1(3) 획지 내 북측에 조성 • 규모 : 최대 4m 확보 •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개방된 통로 조성 - 수색역에서 봉산 및 도서관으로의 연계 강화 - 인접한 수색6구역 및 수색9구역 등과의 보행연결 도모	수색변전소 지중화 및 상부 활용 등을 고려하여 조성

※ 특별계획구역은 특별계획구역지침에 따름

(3) 교통처리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차량출입불허(허용)구간	• 간선부 및 이면부 일부구간 차량출입 금지, 차량출입구간 지정	

※ 특별계획구역은 특별계획구역지침에 따름

사)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1) 특별계획구역

■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수색변전소부지 특별계획구역	은평구 수색동 160대 일원	-	증) 31,615	31,615	-

■ 특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결정사유
신설	①	수색변전소부지 특별계획구역	은평구 수색동 160대 일원	31,615	• 용도지역의 변경, 주변지역과 연계한 계획적 개발유도 및 복합기능(공동주택, 업무시설, 판매시설, 체육시설)수용 등 수색변전소부지 일원의 효율적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2)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 수색변전소부지 특별계획구역 지침

구분		계획내용	
		A1(1) 획지	A1(2) 획지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준주거지역
기반시설확보		- 도로 및 체육시설 - 종전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 시 기반시설 확보 - 체육시설은 건축물로 조성하여 제공(기부채납)	
용도	지정	-	
	불허	권장용도 이외의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복합용도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공동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설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세차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도계장
	권장	-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주택 - 주택법 제8호에 따른 부대시설 - 주택법 제9호에 따른 복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대형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병원
건폐율		50% 이하	60% 이하
용적률(기준/허용/상한)		170% / 190% / 250% 이하	200% / 330% / 400% 이하
높이		최고높이 77m 이하	최고높이 92m 이하
건축선	건축한계선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6m 지정	
교통처리계획		중로 2-464, 2-466, 2-467호선 변 일부구간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기타	공개공지	A1(2)획지 내 공개공지 위치지정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전면공지(6m) 및 보도 조성(접한 보도와 동일한 포장패턴) - 접한 보도 및 도로와 높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조성	
	공공보행통로	- A1(2)획지 북측으로 공공보행통로 조성(최대 폭4m) -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개방된 통로 조성	

※ 용도지역 변경은 향후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

※ 사업시행자는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사업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 산정자료를 제시하고, 개발이익을 고려하여 추가 공공기여(공공시설, 임대주택 등)방안 검토

(3)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및 운영기준

■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

구분	항목	세분	세부계획기준	비고
특별계획 구역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연면적)×0.2	• 20%이상 설치시 (주차장 제외)
		특정층 (꼭대기층) 개방	• 기준용적률×(설치면적/연면적)×1	
	대지 내 공지	공개공지	•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α	• 필로티구조 : α=1.0
		섬지형공지, 침상형공지	•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α	• 침상형구조 : α=2.0
		건축한계선	•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1	• 개방형구조 : α=3.0
		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통로)	•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α	• 개방형구조 : α=1.0
	건축물 개방	건축물 내 공익시설 설치	• 기준용적률×(제공면적/연면적)×1	

■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

구분	항목	세분	세부계획기준	비고
특별계획 구역	환경친화 에너지 효율	옥상녹화	• 기준용적률×(녹화면적/대지면적)×0.1	• 법정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 녹화면적은 대지면적 30%까지만 허용
		자연지반 보존	• 기준용적률×(보존면적/대지면적)×0.1	• 자연토양 및 투수성 포장 • 지하구조물 미설치시
		녹색건축 인증	• 최우수(그린1등급) : 기준용적률×0.12 • 우수(그린2등급) : 기준용적률×0.08 • 우량(그린3등급) : 기준용적률×0.04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 건축물 인증 기준,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 기준 적용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 에너지효율1등급 : 기준용적률×0.08 • 에너지효율2등급 : 기준용적률×0.06 • 에너지효율3등급 : 기준용적률×0.04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에 따른 의 무대상 준수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대	• 신재생에너지1등급 : 기준용적률×0.12 • 신재생에너지2등급 : 기준용적률×0.10 • 신재생에너지3등급 : 기준용적률×0.08 • 신재생에너지4등급 : 기준용적률×0.06 • 신재생에너지5등급 : 기준용적률×0.04	•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준용 - 건축물 인증 심사기준 • 공급률로 등급판정 대체 가능
		중수도시설 설치	• 기준용적률×0.04	• 총 사용량의 10%이상 처리시설 설치 시 적용 • 관련법상 의무 시설인 경우 제외
		빗물관리시설 설치	• 기준용적률×0.04	• 빗물저류 이용시설 용량(ton) 및 빗물침 투시설 • 침투량(ton/hr)의 합이 건축면적×0.05 또는 대지면적×0.02 이상이 되도록 설치
		녹색 주차장	• 기준용적률×(설치면적/대지면적)×0.2	• 기준용적률×0.05 이내

(4) 공공기여 계획(비도시계획시설)

구분	내용	비고
위치	• 은평구 수색동 160-1번지 - 수색1준치관리구역 A1(2)획지 내 설치	
용도	• 체육시설(지역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 : 수영장, 체련단력실 등)	비도시계획시설
규모	• 4,023㎡(부지환산면적 포함) - 연면적 : 4,755㎡ 이상	
공공기여 내용	• 공공시설(체육시설)은 건립 후 관리청에 기부채납	
관리청	• 은평구청	

※ 체육시설 규모(4,023㎡)은 체육시설의 부지환산면적(3,133㎡)과 대지지분(890㎡)의 합산 면적으로 향후 건축허가 시 부지가 액산정(감정평가) 결과 등에 따라 조정

※ 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주차장은 최소 40대 이상 확보할 것

바.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관련 사항

- 1) 재정비촉진계획이 변경되면 수색변전소 지하화 및 주변일대 송전선로(향동C/H ↔ 수색 S/S구간, 4.0km 철거 및 지중화) 등 전력설비 정비사업을 시행한다.

(한전 및 서울시간 MOU, '16.4.29.)

※ 전력설비 정비사업 관련 세부 사항 「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서」 III.첨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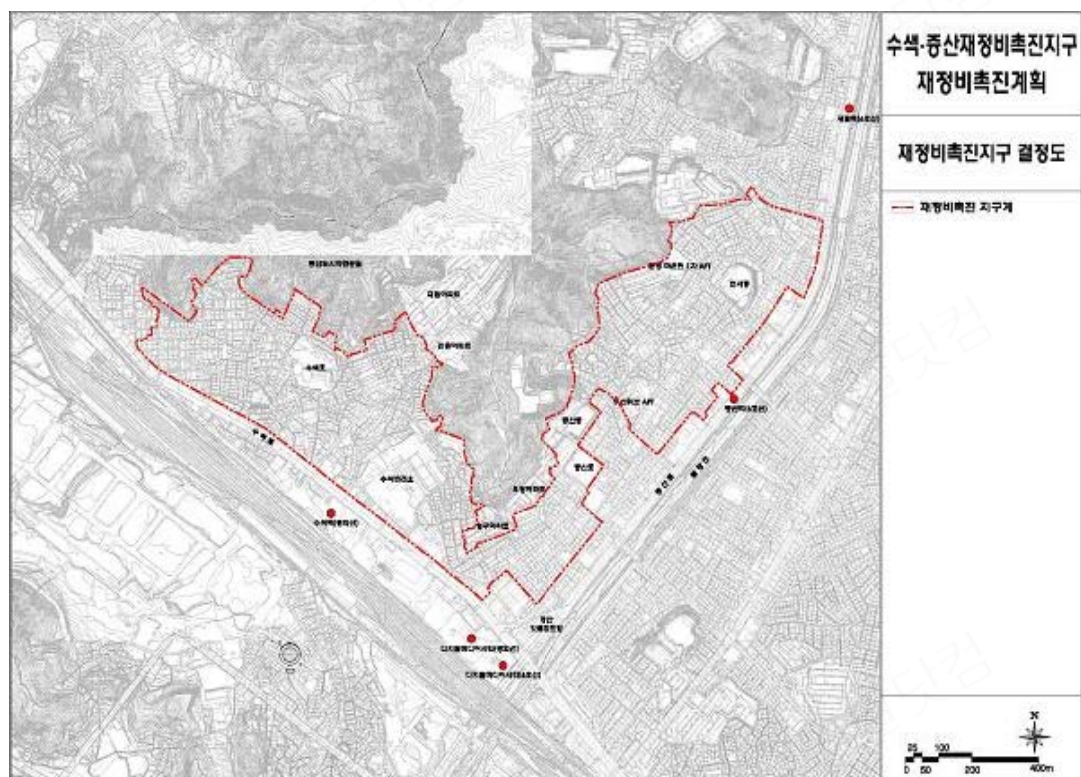
사.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세부사항은 「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서」에 명시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지형도면(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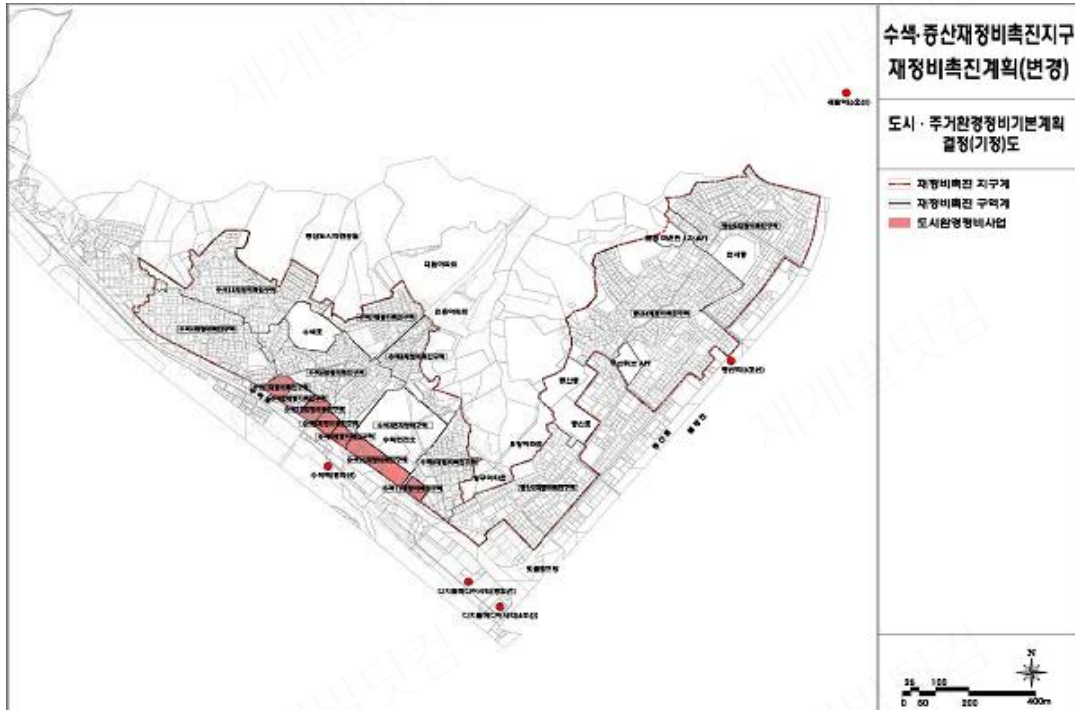
아.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수색·증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 참조

: 생략 (비치도서로 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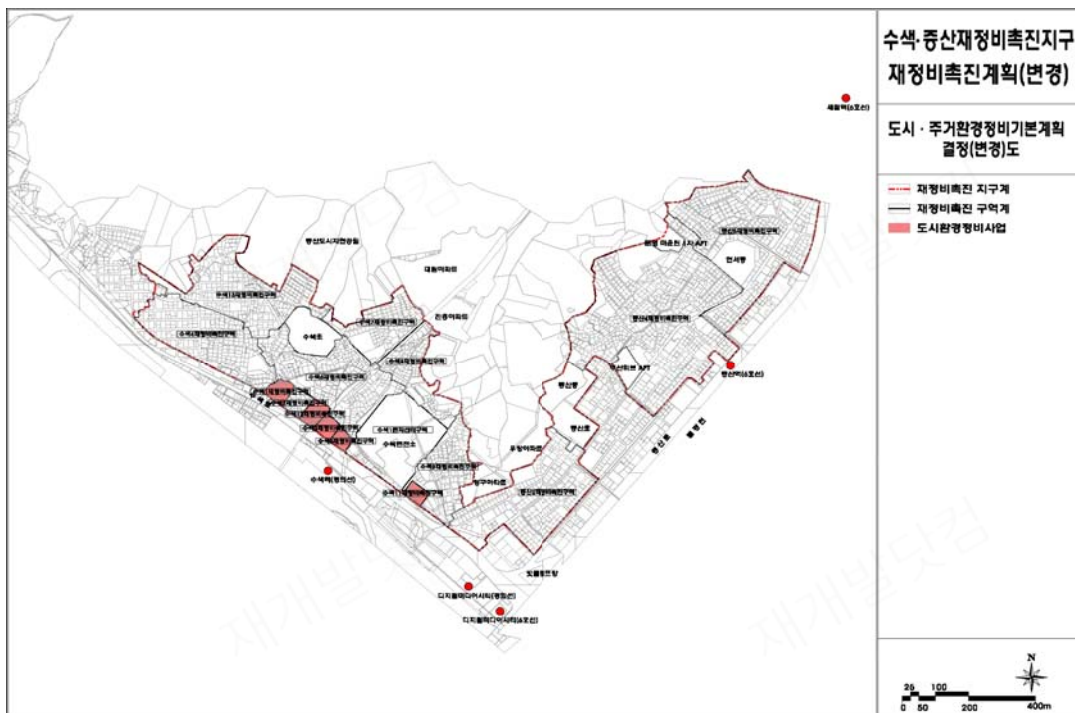
자.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02-2133-7218) 및 은평구 도시계획과(☎02-450-7694)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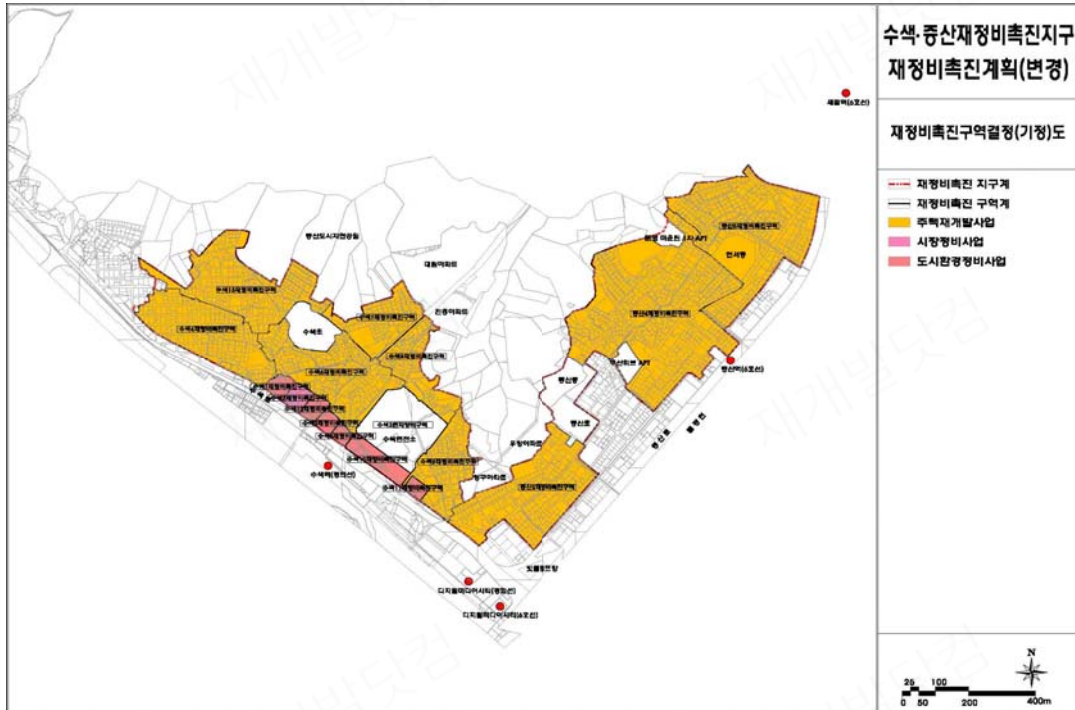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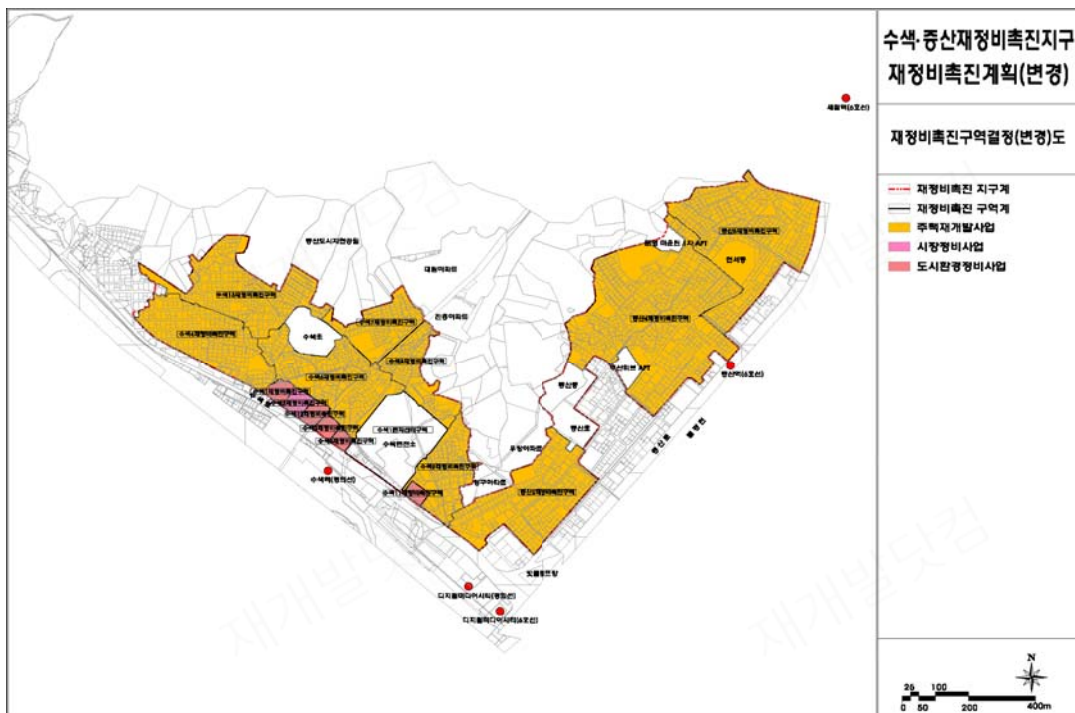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결정(변경)도



■ 재정비촉진구역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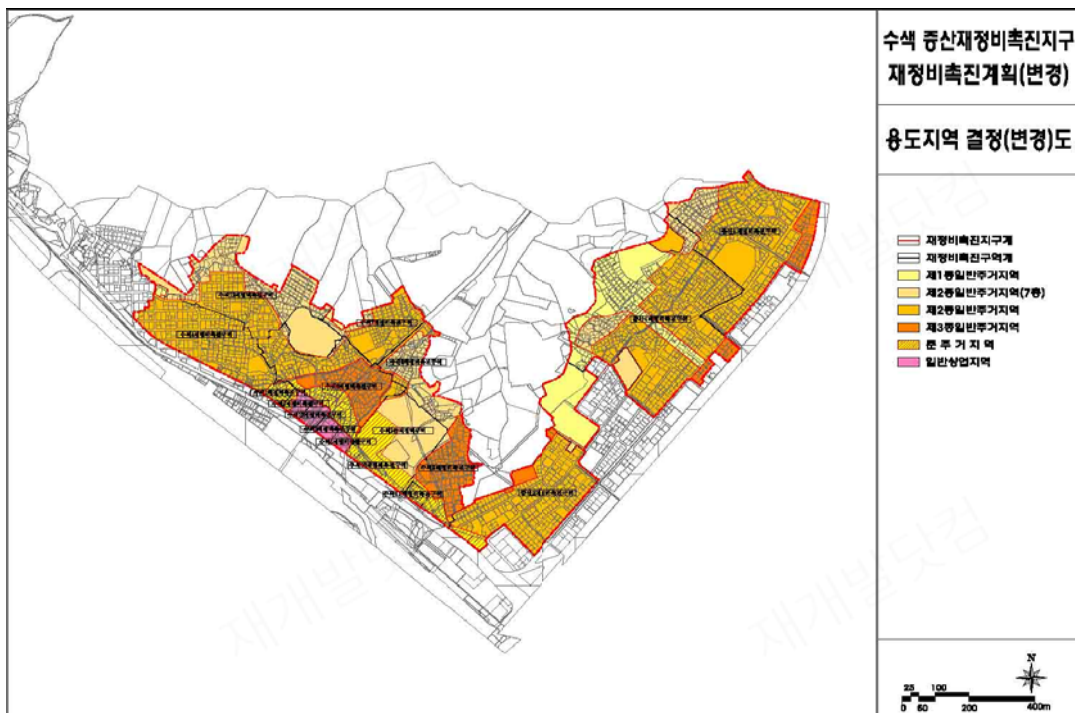
■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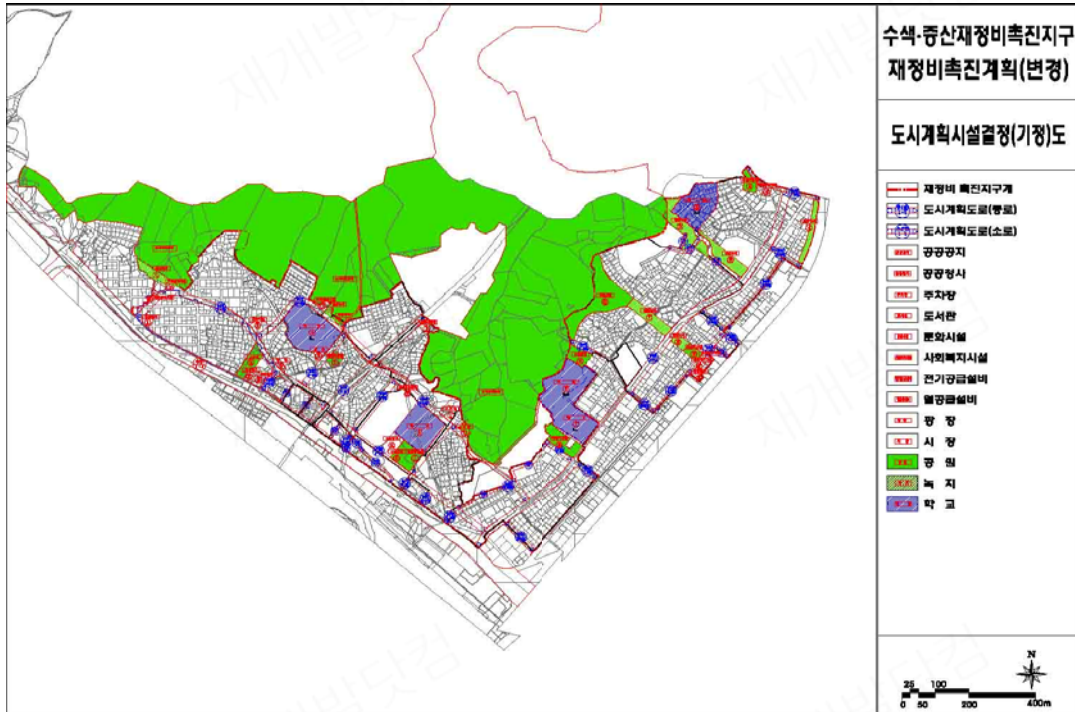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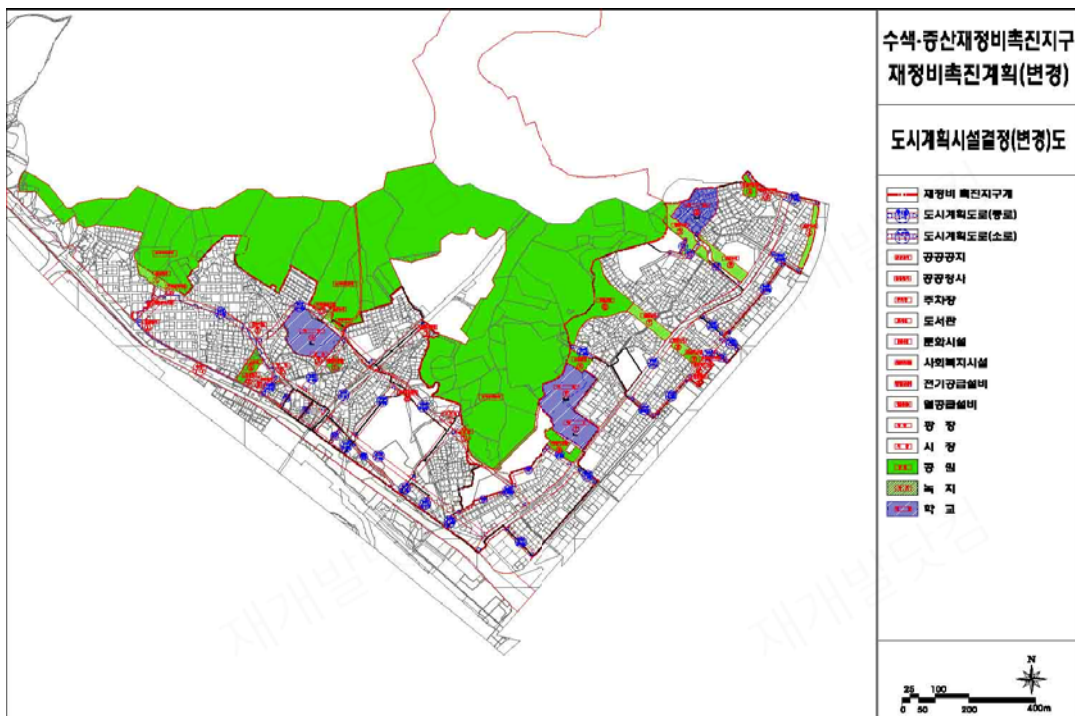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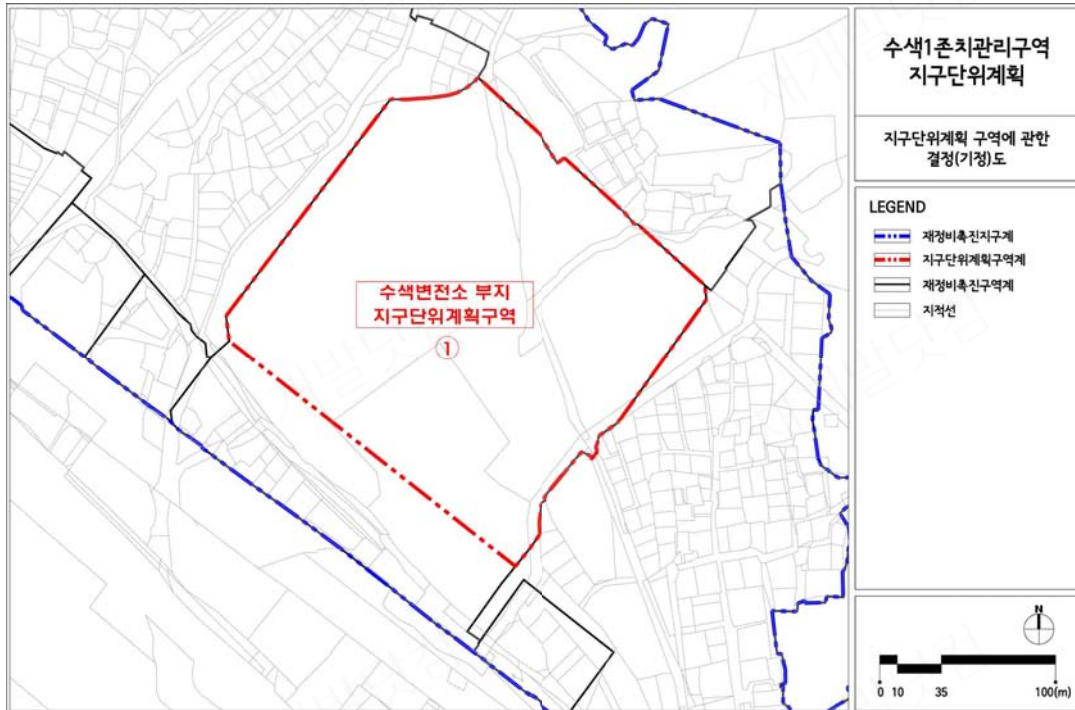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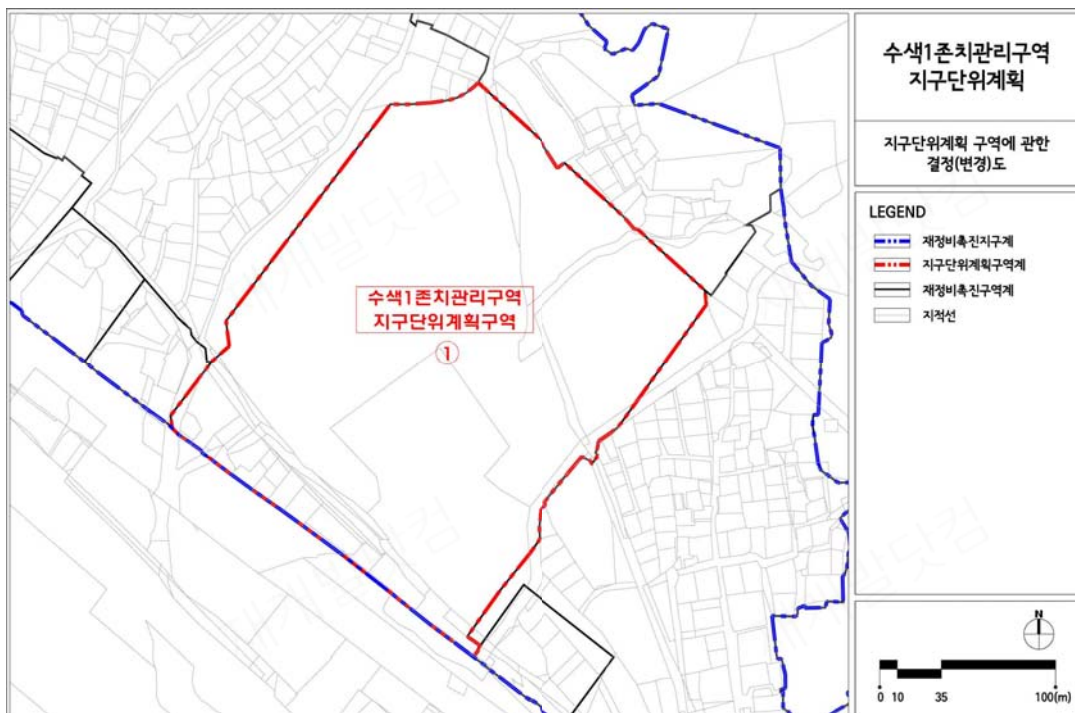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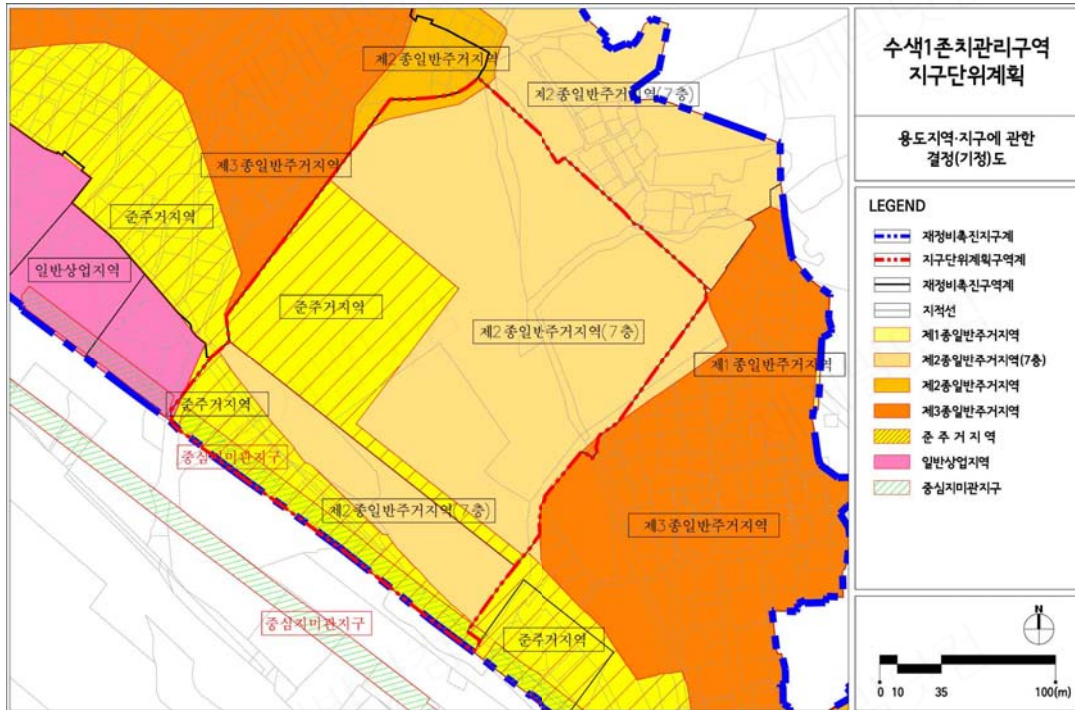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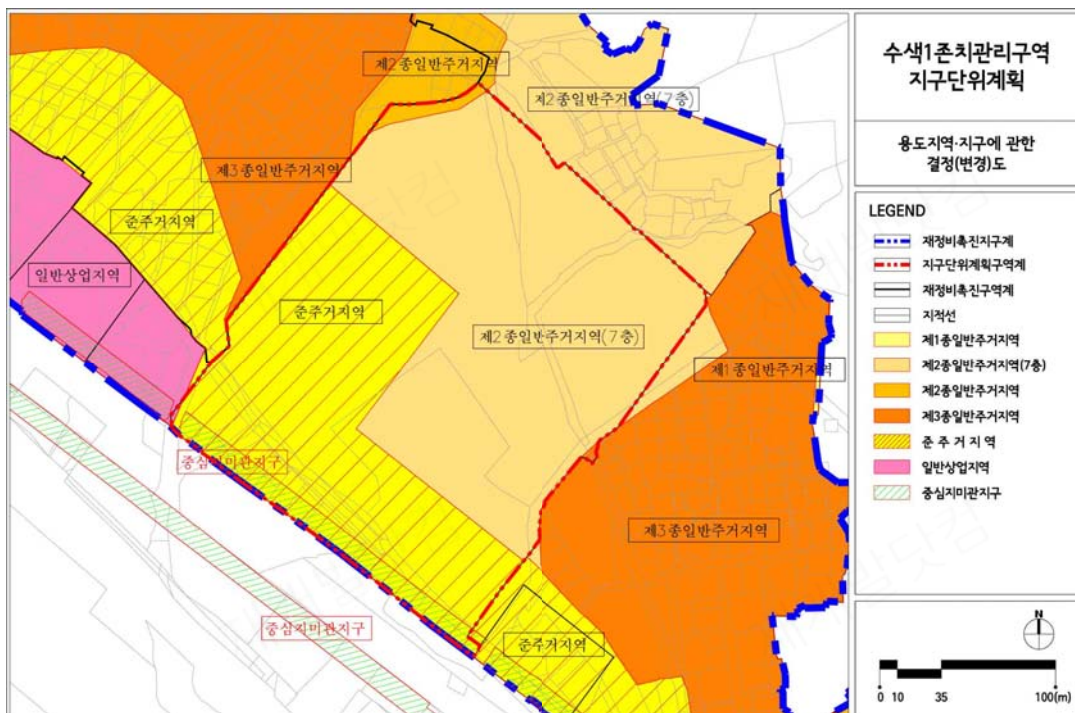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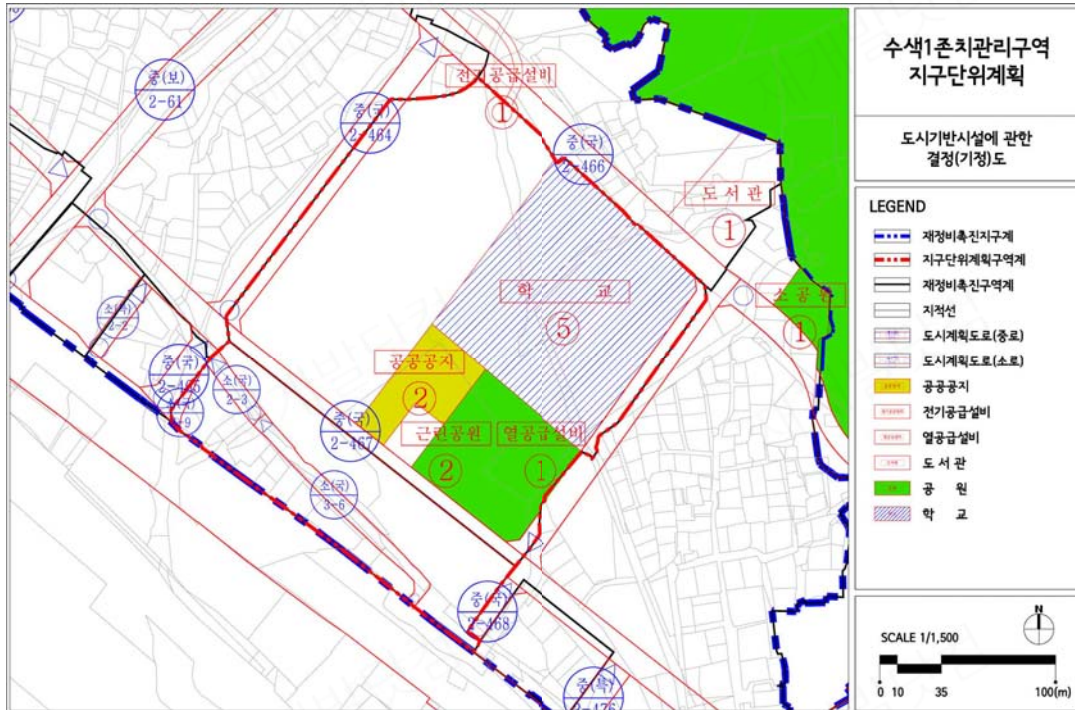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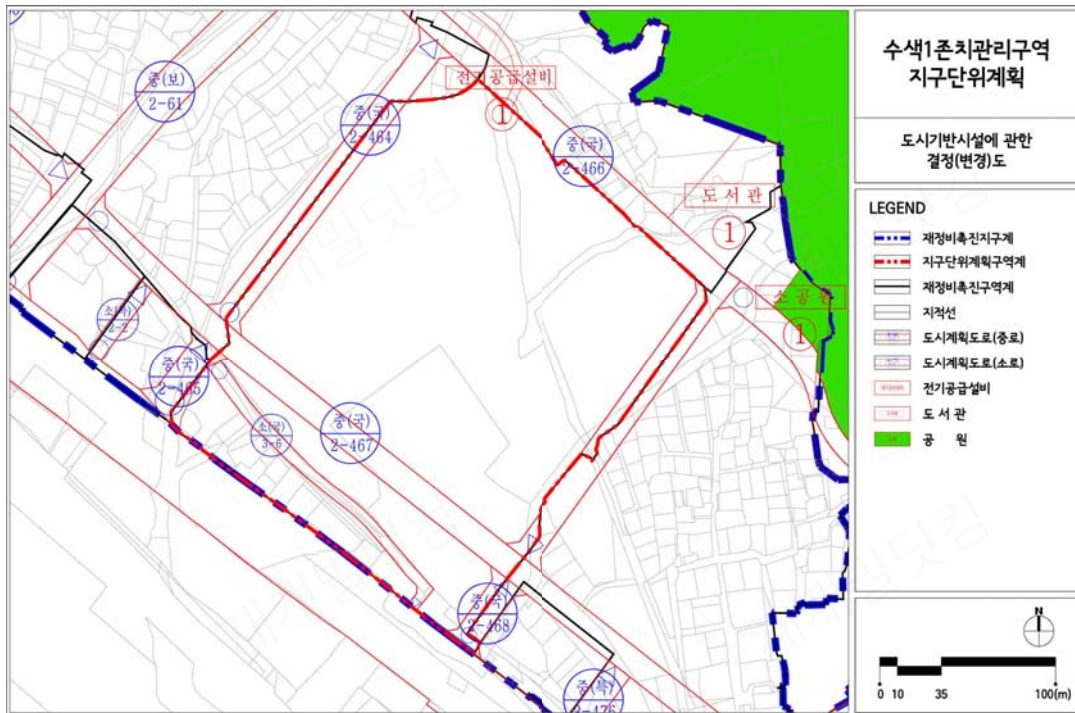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도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기정)도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도

